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지능정보화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출판물의 이용 급증에 따라 국가기관등이 정보 접근과 이용편의를 보장해야하는 유·무선정보통신의 범주에 ‘전자출판물’을 추가하는 한편, 국가기관등이 지능정보제품을 구매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를 보장한 제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는 시책 마련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지능정보화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7344호, 2020. 6. 9. 공포, 2021. 6. 10. 시행)됨에 따라 검증기준, 검증절차 및 구매촉진 등에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입법예고 전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전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에 제4호를 신설한다.

4.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출판물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우선 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접근성 검증 등) ①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
술 관련 기기 및 소프트웨어(이하 “지능정보제품”이라 한다)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우선 구매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를 보장한 지능정보제품(이하 “우선 구매 대상 지능
정보제품”이라 한다)에 해당하는지를 검증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검증의 대상이 되는 우선 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종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4조의3(우선 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에 대한 검증기준 및 절차) ①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 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접근성 검증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한다.

1. 손 또는 팔 동작을 보완하는 기능
 2. 반응시간을 보완하는 기능
 3. 시력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기능
 4. 색상 식별 능력을 보완하는 기능
 5. 청력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기능
 6. 음성입력을 대체하는 기능
 7. 인지능력을 보완하는 기능
 8. 깜빡거림의 사용 제한
 9. 그 밖에 인식 및 운용의 용이성 등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항
- ②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 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접근성 검증을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우선 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접근성 검증신청서와 제품설명서 등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제출해야 한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우선 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접근성 검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검증기준에 적합한지를 평가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우선 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접근성 검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검증의 유효기간은 검증을 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당 2년 이내의 범위에서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증 절차, 제5항에 따른 검증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4조의4(우선 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구매촉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34조의3 제3항에 따라 검증을 받은 우선 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우선 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조달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우선 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구매촉진에 공적이 있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 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① 법 제46조제1항에서 “웹사이 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 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 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유·무선 정보통신” 이란 다음 각 호의 유·무선 정 보통신을 말한다. 1. ~ 3. (생 략) <u><신 설></u> ② (생 략) <u><신 설></u>	제34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 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① ----- -----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u>4.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조</u> <u>제4호에 따른 전자출판물</u> ② (현행과 같음) <u>제34조의2(우선 구매 대상 지능정</u> <u>보제품의 접근성 검증 등) ①</u> <u>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u> <u>제46조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u> <u>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u> <u>및 소프트웨어(이하 “지능정보</u> <u>제품”이라 한다)가 같은 조 제4</u> <u>항에 따라 우선 구매의 대상이</u>

<신 설>

되는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를 보장한 지능정보제품(이하 “우선 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이라 한다)에 해당하는지를 검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증의 대상이 되는 우선 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종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4조의3(우선 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에 대한 검증기준 및 절차) ①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 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접근성 검증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손 또는 팔 동작을 보완하는 기능
2. 반응시간을 보완하는 기능
3. 시력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기능
4. 색상 식별 능력을 보완하는 기능
5. 청력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기능

6. 음성입력을 대체하는 기능

7. 인지능력을 보완하는 기능

8. 깜빡거림의 사용 제한

9. 그 밖에 인식 및 운용의 용이성 등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항

② 제35조제2항에 따른 우선 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접근성 검증을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우선 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신청서와 제품설명서 등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제출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우선 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접근성 검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검증기준에 적합한지를 평가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우선 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접근성 검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검증의 유효기간은 검증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신 설>

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
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당 2년
이내의 범위에서 2회까지 연장
할 수 있다.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증
절차, 제5항에 따른 검증 유효
기간 연장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한다.

제34조의4(우선 구매 대상 지능정
보제품의 구매촉진) ① 과학기
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6조
제4항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
에게 제34조의3제3항에 따라 검
증을 받은 우선 구매 대상 지능
정보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
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
다.

② 조달청장은 우선 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구매를 촉진하
기 위한 조달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우선 구
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구매촉
진에 공적이 있는 자(기관, 단체
를 포함한다)를 포상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	
연 락 처	(044) 202 - 6155